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www.sturightnow.net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수신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님

참조 : 서울시교육청 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제목 : 서울학생인권조례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서

날짜 : 2011년 8월 17(수)

문의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배경내(017-214-3550)

서울학생인권조례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서

1. 무더운 여름,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를 앞두고 더더욱 노고가 크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무탈하신지요?

2. 학생인권조례제정서울본부(아래 서울본부)는 지난 8월 12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청구'가 최종 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유효 청구인 수 97,702명). 처음 주민발의운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과 공감대가 크고 넓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지금은 '학생인권이 행복교육의 시작'이라는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두터워졌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곽노현 교육감 님도 학생인권조례에 큰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만틈 주민발의 성사의 감격을 함께 만끽하고 계시리라 짐작합니다.

3. 저희 서울본부는 향후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방안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과 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한상희)에 특별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서둘러서 서울시의회에 부의해 주시고, 교육청 자체의 학생인권조례안은 만들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생인권조례안을 마련해 오셨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저희가 드리는 제안을 적극 검토해주십사 요청드립니다.

1) 학생인권조례 추진에 따른 교육청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 직후부터 학생인권조례를 빌미로 교육감님을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에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추진 일정을 밟을 경우, 주민투표의 결과에 상관없이 교육감님을 상대로 또다시 맹비난을 퍼붓는 흐름이 거세게 일 것입니다. '학생인권이 교권을 위협한다.'는 기획보도도 또다시 증가할 것이고, 이렇게 벌어진 틈새를 뚫고 체벌금지 정책 이후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던 교사들이 교육청에 대거 불만을 쏟아내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반면, '주민의 뜻을 받는다.'는 취지에서 교육청이 주민발의안에서 보완할 점만 의견을 덧붙여 시의회에 넘길 경우에는 정치적 공격의 화살이 교육감님을 직접 겨냥하는 모양새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교사들도 시민사회단체와 서울시민의 뜻을 모아 추진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대놓고 저항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동안의 노고가 아깝기는 하지만 교육청 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도 학생인권조례의 현장 안착화 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한다면, 조례 추진 자체를 둘러싼 논쟁에 대응하느라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조례 추진 방안을 변경하더라도 교육감님의 공약은 그대로 이행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교육3주체를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인 서울본부는 조례 제정 자체에, 교육청은 조례의 현장 안착화 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자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 조례 제정 시기를 앞당기고 시행 준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의 조례 제정 추진 일정을 보면 빨라도 10월 초에나 조례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이미 성사된 주민발의안은 교육청안이 넘어올 때까지 2개월 가까이를 기다려야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치고 서울시의회에서 병합심의까지 가다보면 또다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여러 정치 일정에 쫓겨 의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도 빚어질 수 있고, 교육청도 조례 제정 이후를 준비할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지난해 9월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지만 올해 전면 시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는 데 매우 조급한 일정을 보내야 했습니다. 조례가 시급히 제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방안을 변경하되, 하반기에는 내년 전면 시행을 준비하는 데 교육청의 힘을 모으는 편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3) 주민발의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주민발의안과 교육청안이 함께 제출될 경우, 서울시의회에서는 통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학생인권조례가 무상급식조례, 광장조례에 이어 3번째로 주민발의운동의 성공 사례로 기록될 수 있는 역사적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은 교육청을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교육 개혁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모아 추진할 때 조례 제정의 본디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기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주민발의 서명에 함께 한 서울시민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발의를 성사시켰다는 자부심이 매우 크고, 주민발의안에 대해 교육청과 의회가 보이는 태도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뜻을 교육청이 받드는 자세를 취한다면, 교육 민주주의도 한 단계 진전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4.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된 일정으로 매우 부산하실 거라 예상됩니다. 저희가 드린 제안에 대해 생각해보시고, 24일 이후 면담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협의했으면 합니다. 수고하십시오.